

#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202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4년도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 항 목         |        | 세 부 내 용  |
|-------------|--------|--|
| 출자 규모       |        | · 총 9,100억원 내외   |
|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 |        | <p>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기술 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p> <p>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p> <p>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p> <p>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p> <p>* 조합 성격 및 공고문 주목적 투자대상 등에 따라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을 준용</p> |
| 출자 대상       | 벤처투자조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             | 개인투자조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             | 역외펀드   | · 국내법에 따른 조합(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아닌 역외펀드   |
| 운용사 선정방법    |        | ·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인력,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
| 접수마감 시한     |        | · 2024년 2월 20일(화), 14:00(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
| 조합 결성 시한    |        | <p>· 결성시한 : 3개월 이내</p> <p>· 결성액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연장 허용</p>   |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 분 야                      |                        | 출자예산<br>(변동가능) | 결성<br>목표액 | 최대<br>출자비율 | 신청가능<br>조합형태     |
|--------------------------|------------------------|----------------|-----------|------------|------------------|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sup>주1)</sup> |                        | 2,000          | -         | -          | 벤처투자조합           |
| 루키리그 <sup>주2)</sup>      |                        | 1,000+a        | 1,667+a   | 60%        |                  |
| 창업초기                     |                        | 800            | 1,334     | 60%        |                  |
| 청년창업                     |                        | 400            | 667       | 60%        |                  |
| 여성기업                     |                        | 100            | 167       | 60%        |                  |
| 재도약                      |                        | 300            | 500       | 60%        |                  |
| 스케일업·중견도약                |                        | 500            | 1,250     | 40%        |                  |
| 소재부품장비                   |                        | 200            | 334       | 60%        |                  |
| 임팩트                      |                        | 200            | 334       | 60%        |                  |
| 해외VC<br>글로벌              | 일반                     | 1,000          | -         | 40%        |                  |
|                          | 해외·국내 Co-GP            | 500            | -         | 40%        |                  |
| 지역                       | 지역 창업초기 <sup>주3)</sup> | 200            | 334       | 60%        | 벤처투자조합<br>개인투자조합 |
|                          | 라이콘                    | 150            | 250       | 60%        |                  |
|                          | 지역혁신 벤처펀드              | 550            | 917       | 60%        |                  |
|                          | 지역AC세컨더리               | 100            | 167       | 60%        |                  |
| R&D 매칭펀드                 |                        | 300            | 300       | -          | 벤처투자조합           |
| 창업사업화지원 매칭펀드             |                        | 40             | 40        | -          |                  |
| 합 계                      |                        | 9,100          | 17,000±a  | -          | -                |

주1)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접수일정, 결성목표액 및 최대 출자비율 등은 민간 출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별도 공지

주2) 루키 분야는 제안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유한 책임회사(신설 예정인 유한(책임)회사 포함) 대상

- ① 등록 5년 이내 ② 운용 중인(해산총회 이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1,000억원 미만
- 단, 모태펀드 및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누적 300억원 이상 출자받은 운용사, '23년 루키리그에 선정된 운용사는 신청 불가

주3) 지역 창업초기 분야는 제안서 접수 시 '중점 투자지역'과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자심의회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

- 해당 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 유형은 제안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개인투자자로 한정

※ 자조합별 출자액은 100~200억원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단, 스케일업·중견도약 분야는 250억원, 지역AC세컨더리 분야는 50억원, 라이콘 분야는 10~100억원, 지역창업초기는 10~30억원 내외로 선정할 예정)

※ Co-GP의 경우 신청 운용사 모두 해당 분야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
| 투키리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전적 투자 대상* 및 방식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예시) 터프 테크(리스크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기술), 그린 테크, 지역투자 등</li> <li>** 초격차, 세컨더리 등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 분야 및 본 공고의 타 출자 분야와 주목적 투자 대상을 동일하게 제시할 수 없음</li> <li>*** 투자 대상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나누어 제시 가능. 단, 제시한 투자의무비율의 합은 60% 이상이어야 함</li> <li>- 주목적 투자 대상의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 협의 시 결정하며, 운용사는 도전적 투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표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li> </ul> |
| 창업초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
| 청년창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②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li> <li>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li> <li>②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br/>(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li>○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
| 여성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① 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li> <li>②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li> <li>③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li> </ul>  |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
| <p style="text-align: center;"><b>재도약</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⑤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① 폐업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폐업일 기준 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타인명의로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이상) 또는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li> <li>** 타인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li> <li>***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실질적인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제외</li> </ul> </li> <li>②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예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재창업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li> <li>- (지자체) 경남형 재창업지원사업, 경기 재도전사업자 지원사업, 경북 청년 CEO재도약지원사업 등</li> </ul> </div> </li> </ul> </li> <li>③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또는 신산업 진출 등 목적의 사업구조개편 추진 계획을 입증하는 기업</li> <li>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전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li> <li>⑤ '23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중 하나 이상이 '22년도 대비 15% 이상 감소한 기업('24년도 투자건에 한해 적용)</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스케일업·<br/>중견도약</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중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li> <li>○ 상기 주목적 대상에 대해 후속투자를 포함하여 펀드 해산시까지 기업당 평균 40억원 이상 투자</li> </ul>   |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소재부품장비</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li> <li>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li> <li>② 정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추천한 기업</li> </ul> <p>* 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다만,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p>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임팩트</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운용사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표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li> <li>-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li> <li>① UN 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펀드 운용 전략을 자율적으로 제안</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UN SDGs : '15.9월 유엔 총회(Summit)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기근, 보건, 교육, 성평등, 물위생, 청정에너지, 고용,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 있는 소비·생산, 기후 변화, 수중 생태계, 육지 생태계, 평화·정의와 강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li>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순수 비영리 조직 제외</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소셜벤처의 사업 분야(예시)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사회통합</th> <th style="width: 30%;">사회문제(필요)</th> <th style="width: 20%;">공동체(공공)</th> <th style="width: 20%;">환경/생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 분야</td> <td>① 취약계층 포용<br/>② 불평등 축소<br/>③ 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td> <td>① 교육/저출산<br/>② 건강과 웰빙<br/>③ 고용/일자리<br/>④ 주택/주거<br/>⑤ 문화<br/>⑥ 사회적책임 이행기업(CSR 등)<br/>⑦ 장애인기업</td> <td>① 공공장소 활용<br/>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br/>③ 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br/>④ 로컬크리에이터</td> <td>①수질과 위생<br/>②공해와 오염 개선<br/>③기후변화<br/>④청정에너지 등</td> </tr> </tbody> </table> </div> <p>※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p> | 구분  | 사회통합   | 사회문제(필요)                                   | 공동체(공공) | 환경/생태 | 사업 분야 | ① 취약계층 포용<br>② 불평등 축소<br>③ 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 ① 교육/저출산<br>② 건강과 웰빙<br>③ 고용/일자리<br>④ 주택/주거<br>⑤ 문화<br>⑥ 사회적책임 이행기업(CSR 등)<br>⑦ 장애인기업 | ① 공공장소 활용<br>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br>③ 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br>④ 로컬크리에이터 | ①수질과 위생<br>②공해와 오염 개선<br>③기후변화<br>④청정에너지 등 |
| 구분   | 사회통합  | 사회문제(필요)  | 공동체(공공)  | 환경/생태                                      |         |       |       |   |   |  |  |
| 사업 분야  | ① 취약계층 포용<br>② 불평등 축소<br>③ 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 ① 교육/저출산<br>② 건강과 웰빙<br>③ 고용/일자리<br>④ 주택/주거<br>⑤ 문화<br>⑥ 사회적책임 이행기업(CSR 등)<br>⑦ 장애인기업 | ① 공공장소 활용<br>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br>③ 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br>④ 로컬크리에이터 | ①수질과 위생<br>②공해와 오염 개선<br>③기후변화<br>④청정에너지 등 |         |       |       |   |   |  |  |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
| <p style="text-align: center;"><b>해외VC<br/>글로벌펀드</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글로벌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로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출자 약정액 이상을 투자</li> <li>* 각 지역별(①미주 ②유럽/중동 ③아시아)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출자 규모 및 배분 계획은 후보사 역량과 출자심의회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li> <li>** 해외·국내 Co-GP 분야는 국내 운용사 단독으로 신청 불가하며, 두 운용사 모두 공동운용사 또는 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양사의 인력이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멤버로 참여하는 등 공동운용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지역<br/>창업초기</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li>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li> <li>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li> <li>③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li> <li>*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등</li> <li>○ 상기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해 ‘중점 투자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li> <li>* 중점 투자지역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라이콘<br/>(기업가형<br/>소상공인)</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④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지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li>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li> <li>*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창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등</li> </ul>   |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          |         |  |   |   |
|--|--|---|----------|---------|--|---|---|
|  | <p>②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개인을 대표자로 하는 기업</p> <p>③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지역상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p> <p>④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 법인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포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기업가형 소상공인 유형(예시)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라이프스타일형</th> <th style="width: 33%;">로컬크리에이터형</th> <th style="width: 33%;">온라인 셀러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기존 생활양식에 아이디어를 결합,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소비 창출</td> <td style="font-size: small;">지역 문화, 특산물 등에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입혀 로컬의 차별화된 생산·소비·문화가치 창조</td> <td style="font-size: small;">제조에 기반한 전통 소상공인이 온라인 접목을 통해 마케팅 영역 확장(동네 → 시도 → 전국)</td> </tr> </tbody> </table> </div> | 라이프스타일형   | 로컬크리에이터형 | 온라인 셀러형 | 기존 생활양식에 아이디어를 결합,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소비 창출 | 지역 문화, 특산물 등에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입혀 로컬의 차별화된 생산·소비·문화가치 창조 | 제조에 기반한 전통 소상공인이 온라인 접목을 통해 마케팅 영역 확장(동네 → 시도 → 전국) |
| 라이프스타일형                                | 로컬크리에이터형   | 온라인 셀러형   |          |         |  |   |   |
| 기존 생활양식에 아이디어를 결합,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소비 창출 | 지역 문화, 특산물 등에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입혀 로컬의 차별화된 생산·소비·문화가치 창조  | 제조에 기반한 전통 소상공인이 온라인 접목을 통해 마케팅 영역 확장(동네 → 시도 → 전국) |          |         |  |   |   |
| <b>지역혁신<br/>벤처펀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조성</li> <li style="margin-left: 20px;">*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li> <li>- 모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 출자자가 공동 참여</li> <li>-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외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모펀드 조성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그 외 출자자와 협의하여 정함</li> </ul>  |   |          |         |  |   |   |
| <b>지역AC<br/>세컨더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등*이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 포함, 이하 ‘구주’)의 인수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style="margin-left: 20px;">*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기획자, 산학협력기술지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면서 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li> <li>○ 상기 주목적 투자자산(구주)의 인수와 동시에 투자대상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등(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규 발행 주식 관련 채권 포함, 이하 ‘동시 투자 신주’)의 인수 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li> <li style="margin-left: 20px;">* 구주와 신주를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구주와 신주의 합산 투자금액을 주목적 투자로 인정. 단, 신주의 주목적 투자 인정한도는 구주 인수 금액을 한도로 함</li> </ul>  |   |          |         |  |   |   |

#### 4. 주요 출자조건

| 항 목                       | 내 용   |
|---------------------------|---|
| <b>업무집행조합원<br/>의무출자비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약정총액의 3% 이상</li> <li>*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li> </ul>  |
| <b>자조합의<br/>투자의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li> </ul>  |
| <b>출자금<br/>납입방식</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li> </ul>  |
| <b>투자(납입)기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이내로 운용사 자율제안</li> </ul>   |
| <b>존속기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운용사 자율제안</li> </ul>  |
| <b>관리보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li> </ul> </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li> </ul> </div> </li> </ul> |

| 항 목               | 내 용   |      |  |                                  |             |             |
|-------------------|---|------|--|----------------------------------|-------------|-------------|
| 기준<br>수익률         | 기준수익률   |      | 분야                                     |                                  |             |             |
|                   | 5% 이상   |      | 창업초기, 청년창업, 스케일업·중견도약, 소재부품장비, 루키리그    |                                  |             |             |
|                   | 3% 이상   |      | 여성기업, 재도약, 임팩트, 지역AC세컨더리, 라이콘, 지역 창업초기 |                                  |             |             |
| 성과보수              |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      |  |                                  |             |             |
| 관리보수 및<br>성과보수 연동 | ○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br>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br>-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br>10%p 상향 가능<br>* 예시)                 |      |  |                                  |             |             |
|                   | 제안서상<br>출자약정총액  |      | 조정 전                                   |                                  | 조정 후        |             |
|                   |   |      | 관리<br>보수율                              | 성과<br>보수율                        | 조정          |             |
|                   | 300억원   | 2.5% | 20%                                    | 관리보수율 0.2%p 하향<br>→ 성과보수율 4%p 상향 |             | 2.3%<br>24% |
| 500억원             | 2.3%  | 20%  | 관리보수율 0.3%p 하향<br>→ 성과보수율 6%p 상향       |                                  | 2.0%<br>26% |             |
| 수탁회사              | ○ 한국벤처투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 중 수탁<br>회사를 선정하여 조합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br>○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br>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br>○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  |                                  |             |             |
| 회계감사인             | ○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   |      |  |                                  |             |             |
| 전자보고<br>시스템       |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   |      |  |                                  |             |             |

| 항 목 | 내 용  |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부재원 활용 펀드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으며, 세부 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li> <li>○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li> <li>○ 개별조합 내 관리보수, 성과보수 요율 및 기준수익률은 단일요율을 적용</li> <li>○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li> <li>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li> </ul> </li> <li>* 정관에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li> <li>**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 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li> </ul> </li> <li>② 한국벤처투자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 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제반 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li> <li>③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li> <li>④ 후행투자는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가결시에만 가능하며, 후행투자 총액은 조합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li> </ul> <li>○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

#### 4-1. 주요 출자조건(해외VC 글로벌펀드)

| 항 목                            | 세 부 내 용  |
|--------------------------------|--|
| <b>기본 조건<br/>(PPM에 명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펀드 약정액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업 투자 의무 내용은 규약 등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 내 명시</li> </ul> </li> <li>○ 글로벌 펀드 약정액 이상의 해외출자자 참여</li> <li>○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이 있는 심사역 2명 이상이 펀드매니저*로 참여. 단, 한국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역을 포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A 상의 Key Person 또는 해당 펀드 투자 인력으로서 IC Member인 자</li> </ul> </li> <li>○ 주요 펀드 운용 정보를 한국벤처투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규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내 명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펀드 출자자 리스트 및 출자/배분 현황,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등), 월별(한국기업 투자 현황 등) 펀드 운용 정보</li> <li>※ 한국벤처투자의 판단 하에 상기 기본 조건에 준하는 조건을 갖춘 해외 운용사에 대한 출자 검토 가능</li> <li>※ 국가·국제기구 협력분야의 경우 한국투자 의무, 해외출자자 참여 및 기타 세부 투자조건은 한국벤처투자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li> </ul> </li> </ul> |
| <b>출자 비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규모의 최대 40% 이내</li> </ul>   |
| <b>출 자 액</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M 내외, 심사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에서 상향 여부 최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환율변동에 따라 출자규모 및 배분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li> </ul>  |
| <b>출자금<br/>납입방식</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li> </ul>  |
| <b>펀드 존속기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내외<br/>(투자기간 : First Closing 또는 Final Closing으로부터 5년 내외로 협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및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자와 사전 협의</li> </ul> </li> </ul>  |
| <b>관리보수<br/>성과보수<br/>기준수익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 소재 국가의 벤처캐피탈 Market Standard를 반영하여 신청사와 협의 가능</li> <li>○ 해외 출자자를 포함한 타출자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li> </ul>   |
| <b>기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주요 출자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출자 신청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li> <li>○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li>○ 글로벌 펀드 약정액 포함, 최소 결성 목표액과 최종 결성 목표액을 함께 제시</li> <li>○ 기타 펀드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

## 5. 인센티브

| 항 목                         | 내 용  |   |           |                                   |   |                        |   |                 |  |
|-----------------------------|--|---|-----------|-----------------------------------|---|------------------------|---|-----------------|--|
| <b>민간출자자<br/>인센티브</b>       | <p>○ 운용사는 아래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①,②,③)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아래의 민간출자자 제외대상은 해당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주목적 투자대상을 부여한 유한책임조합원</li> <li>-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li> <li>- 정부·지자체 및 그 자금을 활용하여 출자사업을 영위하는 곳</li> <li>- 정책자금 출자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li> </ul> </div>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적용조건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①</b><br/>우선손실충당<br/>및<br/>우선수익배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li> <li>○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li> </ul>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②</b><br/>초과수익<br/>이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민간출자자에게 지급* 가능</li> </ul> <p>* 개별 민간출자자 초과수익 지급률 : 30% x (전체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③</b><br/>콜옵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30%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정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sup>경과기간</sup></li> <li>• 행사기간 : 투자(납입)기간 이내</li> <li>•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단,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좌수를 한도로 함</li> </ul> <p>* 전체 민간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ul> </div> </td> </tr> </tbody> </table> | 구분  | 적용조건 및 내용 | <b>①</b><br>우선손실충당<br>및<br>우선수익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li> <li>○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li> </ul>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p> | <b>②</b><br>초과수익<br>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민간출자자에게 지급* 가능</li> </ul> <p>* 개별 민간출자자 초과수익 지급률 : 30% x (전체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p> | <b>③</b><br>콜옵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30%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정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sup>경과기간</sup></li> <li>• 행사기간 : 투자(납입)기간 이내</li> <li>•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단,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좌수를 한도로 함</li> </ul> <p>* 전체 민간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ul> </div> |
|                             | 구분   | 적용조건 및 내용   |           |                                   |   |                        |   |                 |  |
|                             | <b>①</b><br>우선손실충당<br>및<br>우선수익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li> <li>○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li> </ul>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p> |           |                                   |   |                        |   |                 |  |
| <b>②</b><br>초과수익<br>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민간출자자에게 지급* 가능</li> </ul> <p>* 개별 민간출자자 초과수익 지급률 : 30% x (전체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p>  |   |           |                                   |   |                        |   |                 |  |
| <b>③</b><br>콜옵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30%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정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sup>경과기간</sup></li> <li>• 행사기간 : 투자(납입)기간 이내</li> <li>•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단,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좌수를 한도로 함</li> </ul> <p>* 전체 민간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ul> </div>   |   |           |                                   |   |                        |   |                 |  |
| <p>※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p> |  |   |           |                                   |   |                        |   |                 |  |

| 항 목                          | 내 용  |   |  |               |             |    |               |               |               |  |  |  |
|------------------------------|--|---|--|---------------|-------------|----|---------------|---------------|---------------|--|--|--|
| <b>업무집행<br/>조합원<br/>인센티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다음 별도의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령할 별도 인센티브는 모태펀드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조합의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지급</li> </ul>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서</th> <th>적용조건</th> <th>추가성과보수율</th> </tr> </thead> </table>   | 순서  | 적용조건   | 추가성과보수율       |             |    |               |               |               |  |  |  |
|                              | 순서   | 적용조건  | 추가성과보수율  |               |             |    |               |               |               |  |  |  |
|                              | 1. 신주보통주   | 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li> </ul>                               |               |             |    |               |               |               |  |  |  |
|                              | 2. 고용창출  |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 창출한 경우<br>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br>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               |             |    |               |               |               |  |  |  |
|                              | 3. 초기창업기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① 30% 이상 ② 50% 이상 ③ 70% 이상일 경우                                |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5% 이내<br>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br>③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br>* 창업초기, 지역 창업초기 분야 제외 |               |             |    |               |               |               |  |  |  |
| 4. 지방투자                      |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li> </ul> * 창업초기, 청년창업,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 제외 |  |               |             |    |               |               |               |  |  |  |
| <b>벤처투자<br/>촉진<br/>인센티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22년에 모태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연차에 따라 '23년 1년 간 투자소진 목표를 달성한 운용사는 하기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li> <li>* 인센티브 대상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에서 별도 안내<br/>               &lt; 결성연도별 투자소진 목표 &gt;             </li> </ul>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등록 후 만 1년</th> <th>~ 등록 후 만 2년</th> <th>~ 등록 후 만 3년</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출자약정액 총액의 40%</td> <td>출자약정액 총액의 70%</td> <td>출자약정액 총액의 90%</td> </tr> </tbody> </table>                | 구분  | ~ 등록 후 만 1년  | ~ 등록 후 만 2년   | ~ 등록 후 만 3년 | 비율 | 출자약정액 총액의 40% | 출자약정액 총액의 70% | 출자약정액 총액의 90% |  |  |  |
|                              | 구분   | ~ 등록 후 만 1년   | ~ 등록 후 만 2년  | ~ 등록 후 만 3년   |             |    |               |               |               |  |  |  |
|                              | 비율   | 출자약정액 총액의 40%   | 출자약정액 총액의 70%  | 출자약정액 총액의 90%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able>  | 구분  | 내용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관리수수료 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에 0.2%p 요율 상향</li> </ul>   |   |  |               |             |    |               |               |               |  |  |  |
| 출자비율 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최대 출자비율보다 10%p 상향하여 출자(결성목표액 하향)</li> </ul>   |   |  |               |             |    |               |               |               |  |  |  |
| *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         |  |   |  |               |             |    |               |               |               |  |  |  |

| 항 목                         | 내 용  |  |               |
|-----------------------------|--|--|---------------|
| <b>투자목표<br/>연계<br/>인센티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아래의 투자연계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연차별 투자목표비율 &gt;</p>   |  |               |
|                             | 구분   | ~ 등록 후 만 1년  | ~ 등록 후 만 2년   |
|                             | 비율   | 출자약정액 총액의 40%  | 출자약정액 총액의 70% |
|                             | 구분   | 내용   |               |
|                             | 추가<br>관리보수<br>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시점별 투자목표금액의 초과달성분의 1%를 추가 관리보수로 지급</li> <li>* 추가관리보수 금액은 모태펀드가 부담</li> </ul> |               |
| 기준수익률<br>하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시점 투자목표비율을 1회 이상 달성한 조합 대상,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 0.5%p 하향 적용(단, 투자목표비율을 2회 이상 달성하더라도 기준수익률은 0.5%p 초과하여 하향 불가)</li> <li>* 민간출자자의 한국모태펀드에 대한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전체 민간출자자의 콜옵션 미행사시 적용 가능</li> </ul> |  |               |
| ※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        |  |  |               |

※ 해외VC 글로벌펀드는 인센티브 신청대상에서 제외

## 6. 기타 사항

- 중기부 소관 공고 내에서 운용사별 최대 2개 조합까지 신청 가능
  - \* 스타트업코리아, 해외VC글로벌 분야는 미적용
- 기 결성·운용중인 펀드의 추가 증액으로 결성하는 방식(Multi-Closing)으로 신청 불가(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 해외VC글로벌펀드는 제외)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신규 운용 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4. 주요출자조건’의 성과보수와 ‘5. 인센티브’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및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 및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성과보수와 인센티브의 총계는 모태펀드 초과수익의 50%를 한도로 함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 ○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 대 상      | 항 목          | 상 세 내 용   |
|----------|--------------|---|
| 전체       | 지방투자         | 각 출자분야 주목적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총액의 3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br>* 창업초기,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지역AC세컨더리 분야는 가점 신청 대상에서 제외         |
|          | 출자비율         |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보다 10%p 이상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          | 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 | '22년, '23년 선정조합 중 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 신청 후 조합등록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조합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한 자조합 운용사에게 1차 심사 가점 부여(자조합 당 1회 限)<br>* 신청사는 해당 투자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제안서 양식 5-1 참조) |
| 루키리그     | 투자목표의 적극성    |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합산)투자의무비율을 60%보다 10%p 이상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
|          | 투자대상의 차별성    | 최근 5년간('19~'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주목적 투자대상을 제시하는 경우   |
| 지역 창업초기  | 지자체 연계       | 중점 투자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참여가 확정된 경우<br>*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지역 소재 운용사    | 조합 결성 시까지 중점 투자지역에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br>* 본점 이전 확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
| 해외VC 글로벌 | 한국기업 투자의무    | 한국기업 투자의무를 출자약정액의 1배수를 초과하여 설정하는 경우 (예시: 출자약정액의 2배수 이상 한국기업 투자 등)   |

\*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고 해당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이 적용됨(세부내용 3. 제재사항 참고)

##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 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 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 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 (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마. 개인투자조합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준용)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전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말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를 통보받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벤처캐피탈 등\* 또는 벤처투자조합(또는 과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면직 또는 해임된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다른 벤처캐피탈 등\*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 벤처캐피탈 등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TIPS운용사,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개인투자자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법인) 2023년 3분기 말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 ①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가결산 재무제표도 인정).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②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 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재무제표 미제출 시 선정배제

- (개인) 전문개인투자자인 개인의 신용등급이 NICE평가정보 기준 위험등급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심의위원회(구.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 포함)'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 처분   | 1회 | 2회 이상 |
|------|----|-------|
| 경고   | -  | 1년    |
| 감봉   | 1년 | 2년    |
| 직무정지 | 2년 | 5년    |
| 해임   | 5년 | 5년    |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자조합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자조합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신규 운용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자격으로 출자 신청한 경우 제외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경력<sup>주1)</sup> 또는 기타 투자 경력<sup>주2)</sup> 1년 이상인 자로 상근하는 운용 전담인력이어야 함

주1)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TIPS운용사,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경력

주2)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의 투자업무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

| 펀드 규모             | 최소기준 인원 |
|-------------------|---------|
| 300억원 이하          | 2명      |
|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3명      |
| 800억원 초과          | 4명      |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 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 (3) 선정 보류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4) 선정 취소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해외VC 글로벌펀드 출자를 위한 운용사별 최소 결성 규모는 출자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출자신청서 상 운용사가 제안하는 최소 결성 규모와 다를 수 있음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라. 출자심의회에서 조합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운용 인력의 겸직 상태를 결성일 이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겸직 상태 : 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등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 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 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아. 신규 운용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된 개인투자조합이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3. 제재 사항

- 자조합 선정 후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자진 철회 등으로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출자사업 참여 제한 미적용
  - 결성시한 연장 후 자진 철회 등으로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자진철회일 또는 연장된 결성시한일로부터 6개월 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결성시한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취소로 인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자진철회일 또는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단,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을 완료한 경우 또는 모태펀드 출자승인액의 축소로 인해 출자 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 III.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 임팩트 분야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
- 선정 일정(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접수 | '24. 2. 15.(목) 10:00 부터<br>'24. 2. 20.(화) 14:00 까지 | 제안서 접수(온라인) | -       |
| 선정 | '24. 3월(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홈페이지 게재 |
| 결성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조합 결성 완료    | -       |

\* 해외VC 글로벌펀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최종 자조합 선정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IV. 지원 방법 및 질의응답

| 구분   | 내 용   |
|------|---|
| 지원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li> <li>*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2px;"> <a href="http://install.kvic.or.kr">http://install.kvic.or.kr</a> </div>  |
| 설명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4. 2. 7.(수) 15:00</li> <li>- 장소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1관 지하1층 대회의실1<br/>(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지하1층)</li> <li>- 신청 : 참석 희망자는 2024. 2. 6.(화) 15시까지<br/>아래 링크로 참가 신청<br/>(<a href="https://forms.gle/8Tdq2fuMmV63wpQ66">https://forms.gle/8Tdq2fuMmV63wpQ66</a>)</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 출자사업 관련 질의응답은 '24.02.14.(수)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 상기일정은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선정결과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 또는 이의에 대한 회신은 검토결과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진행

## VI. 문의 방법

- 출자사업 관련 문의 : 02-2156-2185, 2237, 2198, fof@kvic.or.kr
  - 해외VC 글로벌펀드 : 02-2156-2040, fvcif@kvic.or.kr
  - 지역 창업초기 : 051-636-2656, 02-2156-2196, angelfof@kvic.or.kr
  - 지역혁신 벤처펀드 : 02-2156-2460, fof@kvic.or.kr
  - 라이콘, 지역AC세컨더리 : 02-2156-2411, angelfof@kvic.or.kr
- 온라인 접수(시스템 사용법) 관련 문의
  - 전산실(데이터센터) :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2024. 02. 05.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 <별첨 1-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 〈별첨 1-2〉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개인투자조합)

### [ 개인투자조합 ]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 의무비를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 의무비를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 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개인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수의 합  $\leq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수의 합  $\leq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 〈별첨 2〉 평가항목

###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 분류         | 주요 평가항목                     |
|------------|-----------------------------|
| 펀드 조기결성 능력 |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
| 투자집행 역량    |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
| 사후관리 역량    |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
| 수익률        |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
| 기타         |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
| 가점 등       |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

\* 라이콘, 지역 창업초기 분야 평가항목 : 운용기관, 투자역량 및 사후관리, 액셀러레이팅 역량 등

### 2차 심의 평가항목

| 분류       | 주요 평가항목             |
|----------|---------------------|
| 펀드 결성 능력 | 결성 가능성 등            |
| 운용전략     |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
| 루키리그     | 제안한 투자 대상의 도전·혁신성 등 |
| 운용사      |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
| 운용인력     |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
| 기타       |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    |

\* 라이콘, 지역 창업초기 분야 평가항목 : 조합 결성·운용, 투자역량 및 사후관리, 액셀러레이팅 역량 등